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8일, 백혜련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백혜련의원)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이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는 바, 현재 규정된 결격사유 외에도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과 유사한 기준으로 하고,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호 및 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오세일 전문위원)

법률은 수범자로 하여금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다른 법률의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면서 부칙을 통해 다시 또 다른 법률의 결격사유를 인용토록 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공동모금재원을 관리·운영하는 모금회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산범죄에 대해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

하려는 취지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안 제11조제3호 중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 제11조제1호에 따라 인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서 사실상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